

## 9. 駐車場法施行規則 改正令

建設部令 第474號 1990. 12. 24

주차장법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 조(목적)** 이 규칙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주차장의 형태)**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의 형태는 운전자가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여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주차장(이하 “자주식주차장”이라 한다)과 자동차가 기계장치에 의하여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주차장(이하 “기계식주차장”이라 한다)으로 구분하되, 이를 다시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1. 자주식주차장: 지하식·지평식 또는 건축건물
2. 기계식주차장: 지하식·건축물식 또는 공작물식

**제 3 조(주차장의 주차구획)**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의 주차

단위구획은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너비 2.3미터 이상, 길이 5미터 이상으로 하고, 지체장애인의 전용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은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너비 3.3미터 이상, 길이 5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평행주차장식인 경우 주차단위구획의 길이는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6.5미터 이상으로 한다.

**제 4 조(노상주차장의 설비기준)**1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상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노상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 안에 있어서의 주차수요와 노외주차장 기타 자동차의 주차에 사용되는 시설 또는 장소와의 연관성을 참작하여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정하게 분포되어야 한다.
2. 주간선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분리대 기타 도로의 부분으로서 도로교통에 크게 지장을 가져오

지 아니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보도와 차도의 구별이 없는 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너비 8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보행자의 통행이나 연도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보도와 차도의 구별이 있는 도로로서 그 차도의 너비가 6미터 미만인 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5. 종단구배가 4퍼센트를 초과하는 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종단구배가 6퍼센트 이하의 도로로서 보도와 차도의 구별이 되어 있고, 그 차도의 너비가 13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또는 고가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7. 도로교통법 제28조 각호의 1 및 동법 제29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도로의 부분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8.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도로의 너비 또는 교통상황 등을 참작하여 그 도로를 이용하는 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너비(3.5미터 이상)가 확보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제 5 조(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법 제4조 제2항·법 제12조 제3항 및 법 제1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설치에 대한 계획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노외주차장의 유치권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에 있어서의 토지이용현황, 노외주차장이용자의 보행거리 및 보행자를 위한 도로상황 등을 참작하여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2. 유치권안에 있어서의 전반적인 주차수요와 이미 설치되었거나 장래에 설치할 계획인 자동차의 주차용에 사용하는 시설 또는 장소와의 연관성을 참작하여 적절한 규모로 하여야 한다.
3.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지역은 녹지지역이 아닌 지역이어야 한다. 다만, 자연녹지지역으로서 지목이 대이고 사실상 대지화되어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단지조성사업에 따른 노외주차장은 주차수요가 많은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가급적 공원·광장·대로변 및 상가인접지역 등에 연접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5. 노외주차장의 출구 및 입구(노외주차장의 차로의 노면이 도로의 노면에 접하는 부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 가. 도로교통법 제28조 각호의 1 및

동법 제29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도로의 부분

나. 횡단보도(육교 및 지하횡단보도를 포함한다)에서 5미터 이내의 도로의 부분

다. 너비 6미터 미만의 도로(주차대수 200대 이상인 경우에는 너비 10미터 미만의 도로)와 종단구배가 10퍼센트를 초과하는 도로

라. 새마을유아원·유치원·국민학교·특수학교·노인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 및 아동전용시설 등의 출입구로부터 20미터 이내의 도로의 부분

6. 노외주차장과 연결되는 도로가 2 이상인 경우에는 자동차교통에 미치는 지장이 적은 도로에 노외주차장의 출구와 입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보행자의 교통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기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주차대수 40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노외주차장의 출구와 입구는 각각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 6 조(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 ①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노외주차장의 출구와 입구에 있어서 자동차의 회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차로와 도로가 접하는 부분의 각지를 전제하여야 한다.

2. 노외주차장의 출구부근의 구조는 당해 출구로부터 2미터를 후퇴한 노외주차장의 차로의 중심선상 1.4미터의 높이에서 도로의 중심선에 직각으로 향한 좌·우측 각 60도의 범위안에서 당해 도로를 통행하는 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노외주차장에는 자동차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차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 주차부분의 장·단변중 1변 이상 이 차로에 접하여야 한다.

나. 차로의 너비는 주차형식에 따라 다음 표에 의한 기준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단위: 미터)

주차형식	차로의 너비	
	출입구가 2개 이상인 경우	출입구가 1개인 경우
평행주차	3.3	5.0
직각주차	6.0	6.0
60도 대향주차	4.5	5.5
45도 대향주차	3.5	5.0
교차주차	3.5	5.0

4. 노외주차장의 출입구의 너비는 3.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출구와 입구를 분리하거나 너비 5.5미터 이상의 출입구를 설치하여 소통이 원활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자주식주차장으로서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에 의한 노외주차장과 기계식주차장으로서 기계로 주차하고자 하는 층까지 운반된 자동차가 주차에 사용되는 부분까지 자주식으로 들어가는 노외주차장의 차로는 제3호의 기준에 의하는 외에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가. 높이는 주차바닥면으로부터 2.3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나. 골폭부는 자동차가 5미터 이상의 내변반경으로 회전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경사로의 차로너비는 직선형인 경우에는 3.3미터 이상(2차선의 경우에는 6미터 이상)으로 하고, 곡선형인 경우에는 3.6미터 이상(2차선의 경우에는 6.5미터 이상)으로 하며, 경사로의 양측벽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의 거리를 띄어 높이 10 내지 15센티미터의 연석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경사로의 종단구배는 직선부분에

서는 17퍼센트를 곡선부분에서는 14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마. 경사로의 노면은 이를 거친 면으로 하여야 한다.

6. 노외주차장의 주차에 사용되는 부분의 높이는 주차바닥면으로부터 2.1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7. 노외주차장의 내부공간의 일산화탄소의 농도는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이 가장 빈번한 시각의 전후 8시간 평균치가 50ppm 이하로 유지되어야 한다

8. 노외주차장에는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조도를 유지할 수 있는 조명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 차로의 노면: 50룩스 이상

나. 주차에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 20룩스 이상

9. 노외주차장에는 자동차의 출입 또는 도로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기계식주차장으로서 제1항에서 정한 구조 및 설비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노외주차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구조 및 설비에 관하여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의 인정을 받아

이를 설치할 수 있다.

③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그 설치하는 부대시설의 총면적은 주차장 총시설면적의 1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1. 관리소·휴게소 및 공중변소
2. 간이매점 및 자동차의 장식품판매점
3. 기타 노외주차장의 관리, 운영상 필요한 편의시설

**제 7 조(노외주차장의 설치신고등)** ①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서울특별시 및 직할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외의 자가 노외주차장의 설치신고(구조변경신고 및 설치완료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노외주차장 설치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조변경 신고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6호의 서류에 한하여 그 제출을 요하며, 설치완료신고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한다.

1. 사업지안의 주차시설배치도
2. 인근 300미터 이내의 도로의 교통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평면도(축척 1천 200분의 1 이상일 것)
3. 토지의 지번·지목 및 면적을 기재한

토지조서

4. 토지등기부 등본
  5. 토지사용승낙서(신청인이 토지소유자가 아닌 경우에 한한다)
  6. 노외주차장설치에 대한 계획서(구조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계획서)
- ②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설치에 관한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의 노외주차장 설치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 8 조(관리규정)** ①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외의 노외주차장 관리자가 작성하는 관리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외주차장의 위치
2. 노외주차장의 종류 및 명칭
3. 노외주차장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소의 대표자의 성명)
4. 노외주차장의 운영관리조직에 관한 사항
5. 노외주차장의 이용시간에 관한 사항(1일에 있어서 이용이 개시되는 시간과 종료시간 및 휴업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6.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에 관한 사항(주차요금은 확정액으로 정하고, 주차요금의 적용방법, 징수방법, 징수시

기, 반환방법 등을 포함한다)

7. 노외주차장의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8. 노외주차장의 차종별 주차대상 자동차의 수량

②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서는 주차시간 30분을 단위로 계산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차시간 및 시간대별로 구분하여 차등 적용하도록 할 수 있다.

**제 9 조(관리규정의 신고 등)** ①시장·군수의 노외주차장관리자가 법 제15조 제2항 또는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관리규정을 제출하거나 변경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노외주차장관리규정신고서 또는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관리규정(변경의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의 관리규정을 말한다)
2. 주차요금산출기초서
3. 신·구조문대비표(변경신고의 경우에만 한다)

②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관리규정의 제출 또는 변경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노외주차장 관리규정신고증 또는 변경신고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0조(공용중지신고서등)** ①영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공용중지·폐지신고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②시장·군수는 영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3호 서식의 노외주차장공용중지·폐지신고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1조(부설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 ①제5조 제6호 및 제7호와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으로서 해당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의 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당해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주택에 관하여는 제7호와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하며, 부설주차장의 총주차대수규모가 5대 이하인 자주식주차장인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설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을 완화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계획서)**

영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계획서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제13조(부설주차장설치의무면제신청서 등)** ①영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설치의무면제신청서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

②시장·군수는 법 제19조 제5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설치의무를 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후 지체없이 납부할 주차장설치비용·납부장소 및 납부기한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주차장설치비용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 등 부설주차장설치의무면제신청인이 주차장설치비용을 납부한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이 설치되어야 할 건축물에 관한 건축허가를 할 때에 별지 제5호 서식의 부설주차장설치의무면제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4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산정기준 등)** 법 제19조 제7항 및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기준은 영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첨부된 토지가액평가서에 의하여 산정된다. 이 경우 주차대수1대당 소요대지면적은 18제곱미터로 하되 총주차대수 규모가 5대 이하인

때에는 주차대수 1대당 소요대지면적은 11.5제곱미터로 한다.

**제15조(부설주차장의 추가설치등)** 영 제1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는 별지 제호 서식에 의하고, 부설주차장설치면제신청 및 비용납부계획서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다.

**제16조(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신청등)** 영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부설주차장용도변경신청서에 용도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부설주차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증표)** 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다.

##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존의 주차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주차장은 이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 본다.

③(허가등이 신청된 시설물에 관한 경과

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의 허가·인가 등을 받았거나 허가·인가 등을 신청한 경우로서 당해 시설물 또는 그 부지에 설치되는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 등에 관하여는 제6조 제1항 제4호, 동조 동항 제5호 다목 및 라목, 동조 동항 제7호 및 제8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건축허가제한으로 허가신청이 거부된 건축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건축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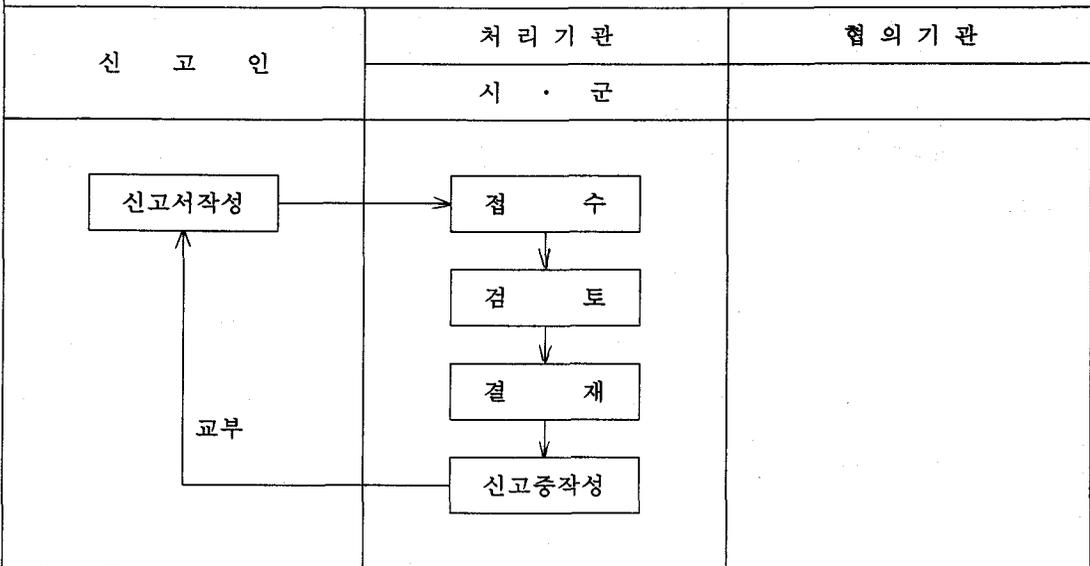
건축허가를 신청한 건축물중 동법에 의한 허가요건을 갖추었으나 동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제한으로 인하여 허가신청이 거부된 경우로서 동 건축허가제한이 종료된 날부터 3월 이내에 다시 동일한 내용의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때에는 당해 건축물 또는 그 부지에 설치되는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 등에 관하여는 제6조 제1항 제4호, 동조 동항 제5호 다목 및 라목, 동조 동항 제7호 및 제8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기재상 주의사항

1. ①란은 신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한다.
2. ③란은 신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소재지를 기재한다.
3. ④란은 신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전화번호를 기재한다.
4. ⑥란은 주차장법시행규칙 제2조에 규정된 주차장의 형태를 구분 기재한다.
5. ⑧란은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는 주차대수와 주차장의 면적을 기재한다.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 제 호

주차장법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필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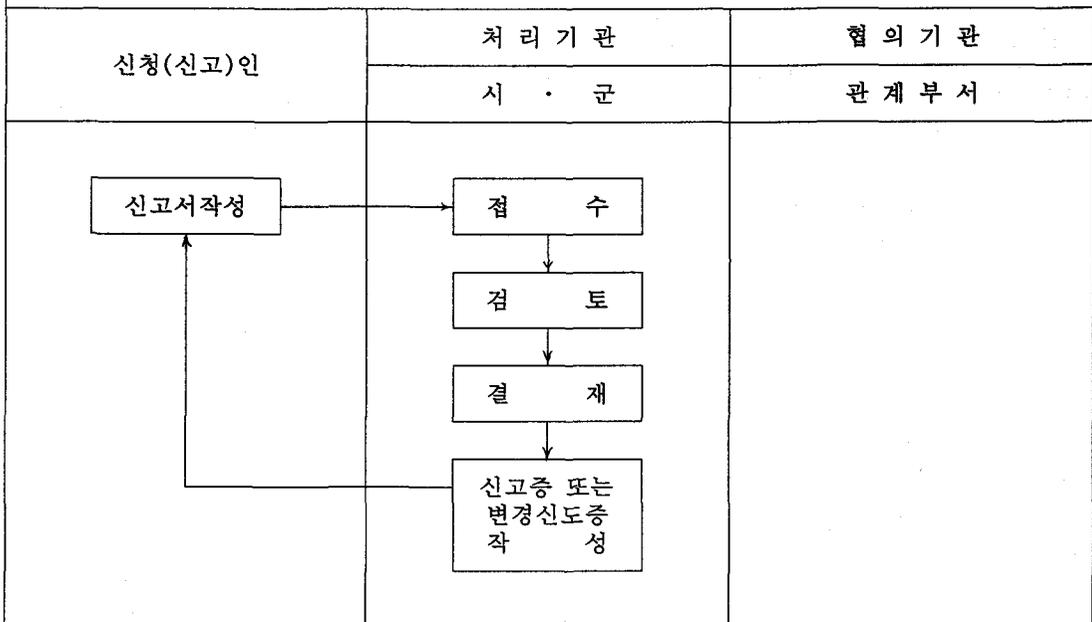
인



※ 기재상 주의사항

1. ①란은 신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한다.
2. ③란은 신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소재지를 기재한다.
3. ④란은 신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전화번호를 기재한다.
4. ⑥란은 주차장법시행규칙 제2조에 규정된 주차장의 형태를 구분 기재한다.
5. ⑧란은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는 주차대수와 주차장의 면적을 기재한다.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 제 호

주차장법시행규칙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증을 교부합니다.  
 변경신고서

년 월 일

(시장·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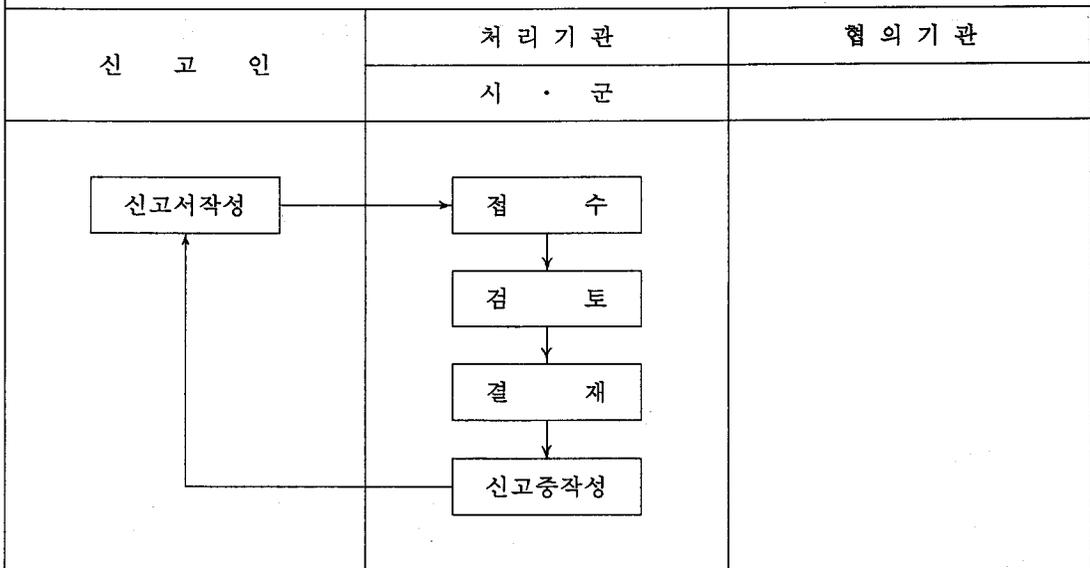
인



※ 기재상 주의사항

1. ①란은 신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한다.
2. ③란은 신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소재지를 기재한다.
3. ④란은 신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전화번호를 기재한다.
4. ⑥란은 주차장법시행규칙 제2조에 규정된 주차장의 형태를 구분 기재한다.
5. ⑨란은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는 주차대수와 주차장의 면적을 기재한다.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 제 호

주차장법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필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 인



※ 기재상 주의사항

1. ①란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한다.
2. ③란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소재지를 기재한다.
3. ④란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전화번호를 기재한다.
4. ⑥란은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는 주차대수와 주차장의 면적을 기재한다.
5. ⑧란은 주차장법시행규칙 제2조에 규정된 주차장의 형태를 구분 기재한다.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신고)인	처 리 기 관	협 의 기 관
	시 · 군	
	<pre>graph TD; A[계획서작성] --&gt; B[접수]; B --&gt; C[검토]; C --&gt; D[결재]; D --&gt; A;</pre>	

<b>부설주차장설치 의무면제신청서 및 면제서</b>				처리기간
				5 일
신고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④ 전 화 번 호	
시설물	⑤ 위 치		⑥ 용 도	
	⑦ 규 모			
주차장	⑧ 총 규 모	대 ( m <sup>2</sup> )		
	⑨ 이 미 설 치 된 규 모	대 ( m <sup>2</sup> )		
	⑩ 추 가 설 치 할 규 모	대 ( m <sup>2</sup> )		
	⑪ 설 치 에 필 요 한 비 용	원		
<p style="text-align: center;">주차장법 제19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설치의무를 면제받고자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첨부하여 이에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50px;">신청인 인</p> <p style="text-align: left; margin-left: 100px;">(시장·군수) 귀하</p>				
첨부서류  대지에 대한 토지가액평가서				수수료
				없 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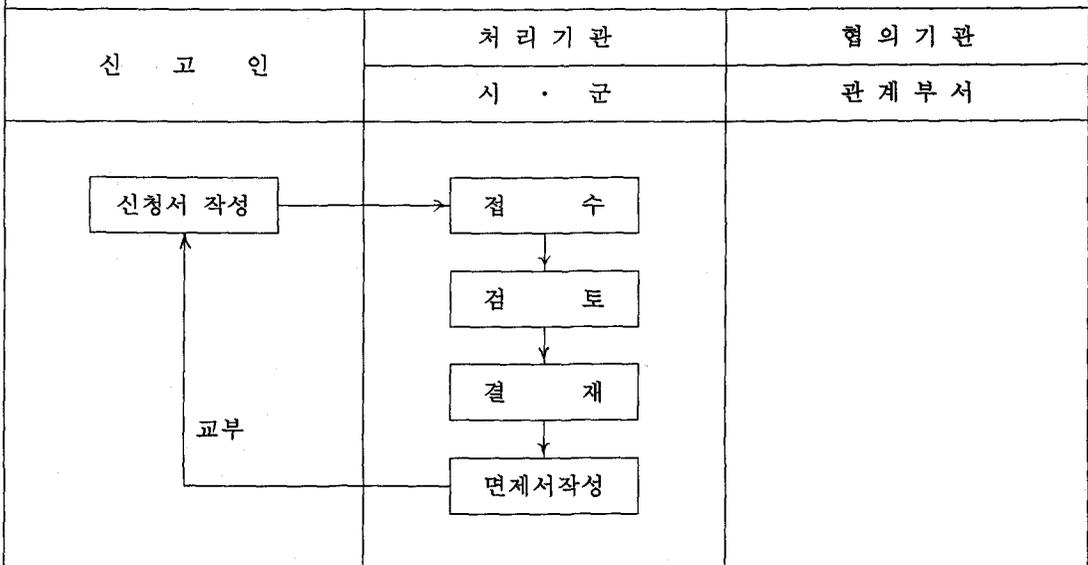
30303-01011민  
'84. 12. 5 승인

190m × 268m  
(인쇄용지 (2급) 60g/m<sup>2</sup>)

※ 기재상 주의사항

1. ①란은 신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한다.
2. ③란은 신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소재지를 기재한다.
3. ④란은 신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전화번호를 기재한다.
4. ⑥란은 건축법시행령 부표(용도분류표)에 의하여 구분하여 기재한다.
5. ⑦란은 건축물의 연면적을 기재한다.
6. ⑨ 및 ⑩란은 건축물신축의 경우에는 기재하지 아니한다.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면제 제 호

주차장법시행규칙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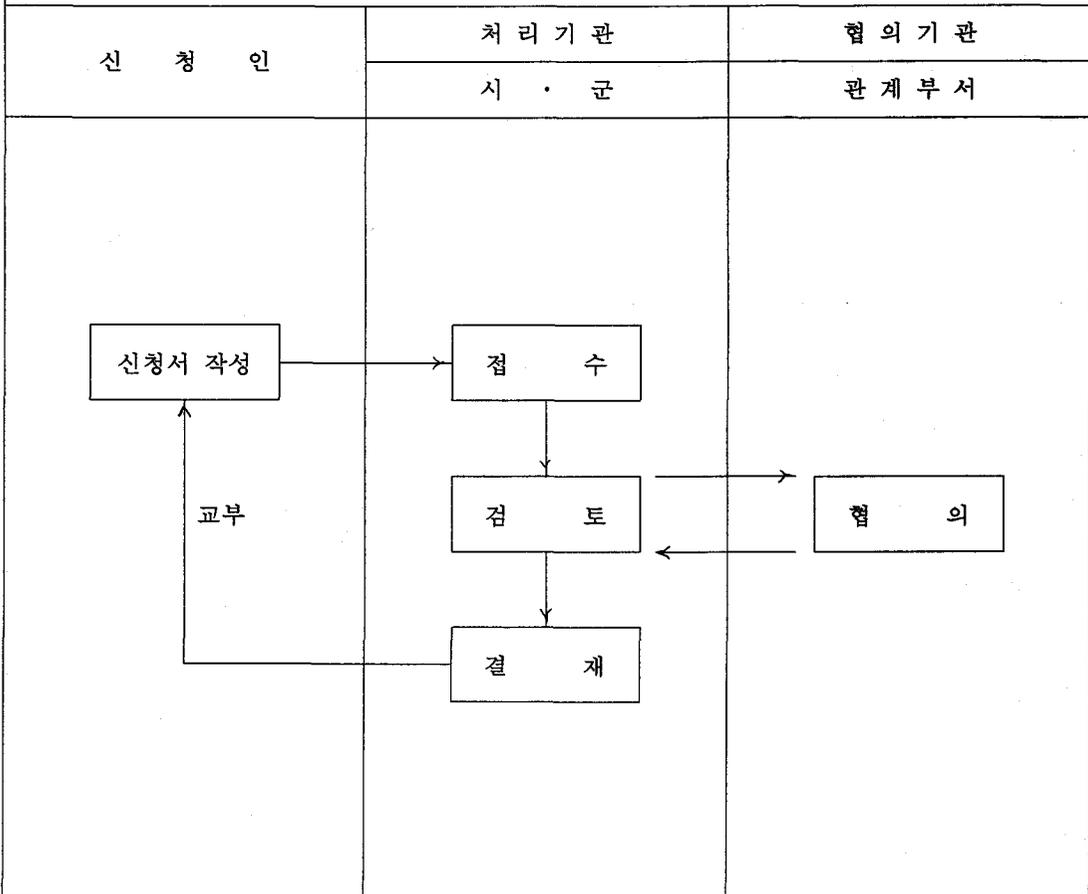
인



※ 기재상 주의사항

1. ①란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한다.
2. ③란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소재지를 기재한다.
3. ④란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전화번호를 기재한다.
4. ⑥란은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는 주차대수와 주차장의 면적을 기재한다.
5. ⑪란은 주차장법시행규칙 제2조에 규정된 주차장의 형태를 구분 기재한다.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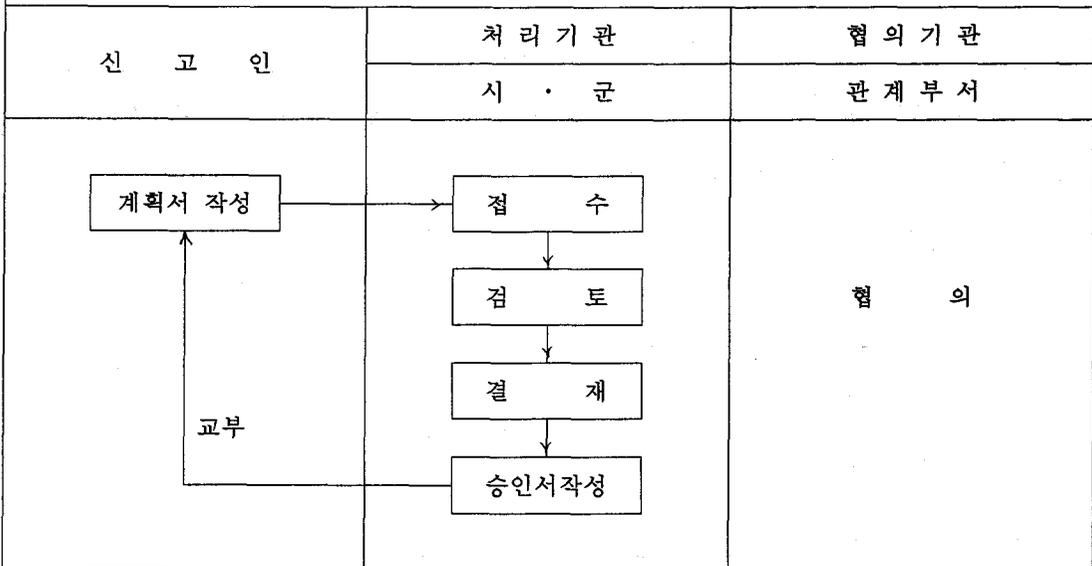




※ 기재상 주의사항

1. ①란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한다.
2. ③란은 신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소재지를 기재한다.
3. ④란은 신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전화번호를 기재한다.
4. ⑥란은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는 주차대수와 주차장의 면적을 기재한다.
5. ⑥란은 이미 설치된 주차장의 주차대수와 주차장의 면적을 기재한다.
6. ⑦란은 추가명령받은 주차장의 설치대수와 주차장의 면적을 기재한다.
7. ⑧란은 추가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기재한다.
8. ⑨란은 주차장의 추가시설에 필요한 비용납부계획을 기재한다.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 제 호

주차장법시행령 제1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설치면제 및 비용납부계획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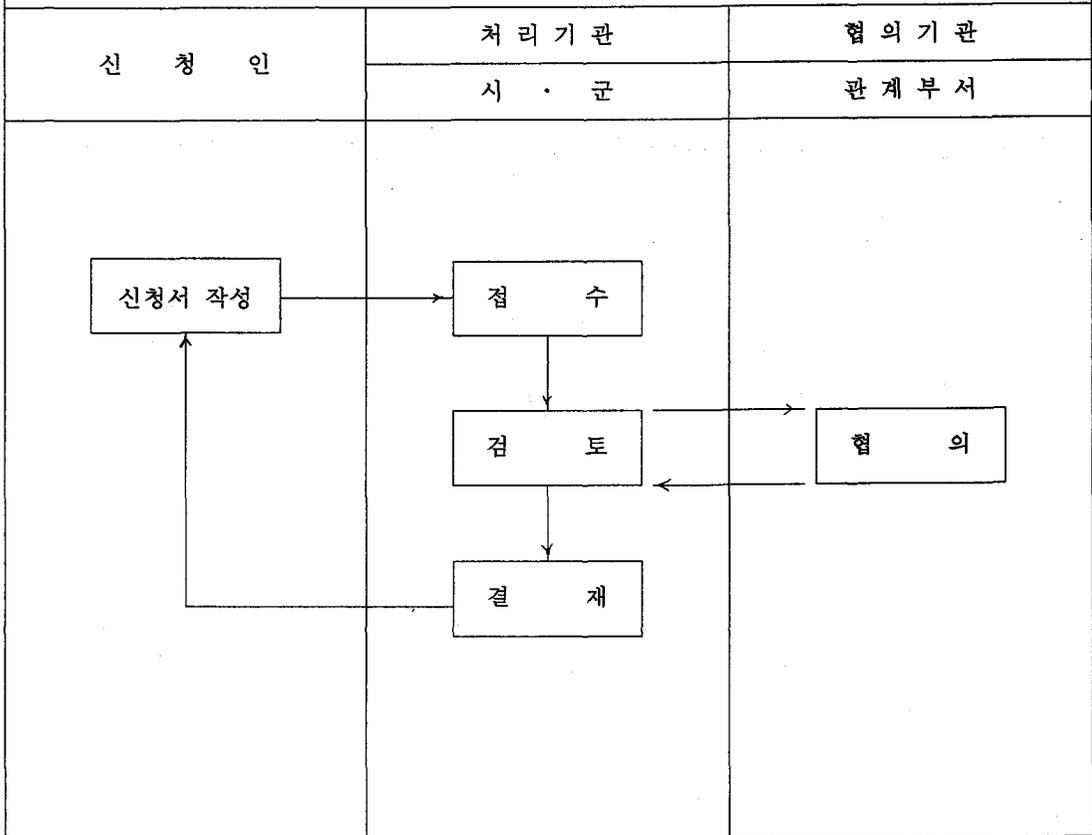
(시장·군수) 인



※ 기재상 주의사항

1. ①란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한다.
2. ③란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소재지를 기재한다.
3. ④란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전화번호를 기재한다.
4. ⑥란은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는 주차대수와 주차장의 면적을 기재한다.
5. ⑦란은 주차장법시행규칙 제2조에 규정된 주차장의 형태와 당초내용 및 변경내용을 간략하게 기재한다.
6. ⑧란은 주차장을 용도변경하는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한다.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분 증 명 서

주 소

소 속

직 명

성 명

위 사람은 주차장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임일 증명함.

유효기간 : 19 . . . 부터  
          : 19 . . . 까지( 일간)

○ ○ 시 장 인  
(군 수)

## ◀ 개정이유 ▶

개정된 주차장법(1990. 4. 7. 법률 제4230호) 및 동법시행령(1990. 8. 8. 대통령령 제13066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 주요골자 ▶

가. 주차장의 설비기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조정함.

### 1) 주차구획

현행 규정상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너비 2.5미터 이상, 길이 5.5미터 이상으로 되어 있는 주차장의 주차구획을 앞으로는 너비 2.3미터 이상, 길이 5미터 이상으로 조정함으로써 주차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제3조).

### 2) 차로의 너비

현행 규정상 직각주차장형식인 경우 7.6미터 이상으로 되어 있는 주차장의 차로너비를 6.0미터 이상으로 축소함으로써 토지의 이용도를 높이도록 함(제6조 제1항 제3호 나목).

나. 노외주차장에는 관리소·휴게소·공중변소등 주차장의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부대시설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부대시설규모를 주차장 총시설면적의 10퍼센트 범위내로 하고 간이매점 및 자동차장식품판매점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영노외주차장설치의 활성화를 기하도록 함(제6조 제3항).

다. 시행령의 개정으로 주차장설치의무가 부과된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에 대하여 차량의 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로의 너비를 따로 두지 아니하도록 하고, 주차장의 총 주차대수규모가 5대 이하인 자주식주차장의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구조 및 설비기준을 완화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정하도록 함(제11조 제2항).

라. 차량통행의 금지 또는 주변의 토지이용상황등 입지여건상 당해 부지안에 부

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 주차장설치비용을 시장·군수에게 납부하고 주차장설치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면적기준을 현재는 주차대수 1대당 24제곱미터로 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주차구획과 차로외의 기준 등이 하향조정됨에 따라 그 면적을 18제곱미터로 하되, 총 주차대수규모가 5대 이하인 때에는 11.5제곱미터로 완화조정하여 주차장설치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도록 함(제14조).

〈건설부 제공〉